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92
----------	------

2020년 2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박순규 의원 (찬성자 20명)
-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2월 25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순규 의원)

가. 제안이유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개편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3항 외 7개 조항)

- (2) 상위법령에서 장애에 대한 ‘등급’을 ‘정도’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 (3)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에 대한 지급금액의 한도를 규정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17.7.26)되어 ‘국민안전처’에 속해있던 소방조직이 ‘소방청’으로 분리·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의용소방대 자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장학금의 수혜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

- 의용소방대¹⁾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58년에 「소방법」 제정으로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

1)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1972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2019년도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94대 4,840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음. ([표 1] 참조)

[표 1] 2019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 ○ 1958.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 ○ 1972. 12. 20.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 ○ 2008.1월 소방기본법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근거 신설 ○ 2014. 1.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정 공포(7월29일 시행)
조직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총 3,883대, 총 95,276명으로 구성 활동 중 - 서울시 총 194대 4,840명으로 구성 활동(정원)/현원 4,455명 ○ 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총 15,504회, 연인원 55,504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 ○ 봉사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총 2,657회, 연인원 12,003명 출동하여 봉사활동 전개
예산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구분 : 시·도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 ○ 예산현황 : 총 34억 7백만원(‘19년) 추경포함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관련(안 제2조제3항 외 7개 조항)

- 안 제2조제3항 외 7개 조항은, 2014년 11월 19일 독립청으로 운영되던 소방방재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²⁾를 계기로 국민안

2) 발생일: 2014년 4월 16일

전처³⁾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되면서 ‘안전행정부령(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총리령’으로 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 흡수·통합되면서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이에 따라 ‘총리령(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총리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용 문구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춰 ‘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법률이 2017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방재난 본부는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장애 관련 용어의 변경(안 제18조제1항)

- 안 제18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에 대한 ‘등급’을 ‘정도’로 변경함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기존에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3) 2014년 11월 19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임.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7. 12. 19, 시행 2019. 7. 1

다. 장학금 지원대상의 확대 관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 안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19.12.3)에 따라 무상교육이 확대⁵⁾되면서 지원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학생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표 2] 참조)

[표 2]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u></p> <p>2. 지급인원: 자녀 1명</p> <p>3. 지급금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u>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u></p> <p>② (생략)</p>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p> <p>-----</p> <p>-----</p> <p>-----</p> <p>-----</p> <p>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u></p> <p>2. (현행과 같음)</p> <p>3. 지급금액: <u>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대학생이라 하여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

5)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

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며보면,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운영되던 제도임을 감안할 때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수요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생을 포함시켜 당초 취지를 살려 나간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현재 대학생의 등록금 납부액을 고려하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금액이 현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정진술 위원)

답변) 타 지자체에서는 ‘1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상향조정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적절하다 하겠음.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92
----------	------------

제안일자 : 2020년 2월 25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대학생 등록금 납부액에 대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대학생에 대한 지급금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금액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120퍼센트”를 “15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u></p> <p>2. 지급인원: 자녀 1명</p> <p>3. 지급금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u>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u></p> <p>② (생략)</p>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 ----- ----- ----- ----- ----- ----- -----.</p> <p>1. 지급대상자격: 「<u>초·중등교육법</u>」에 따른 <u>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u></p> <p>2. (현행과 같음)</p> <p>3. 지급금액: <u>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 ----- ----- ----- ----- ----- -----150퍼센트----- -----.</p> <p>②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을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 중 “총리령” 부분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호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의 정도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

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장이 발급하고, 재발급의 경우도 같다.</p>	<p>----- -----.</p>
<p>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u>총리령</u>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u>법시행규칙</u>----- -----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심의대상) <u>총리령</u>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제12조(심의대상) <u>법시행규칙</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6조(소집수당)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 및 <u>총리령</u> 제19조에 의한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출동(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소집수당) ① ----- -----<u>법시행규칙</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 및 <u>총리령</u>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1. 요양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p> <p>2. 장애보상: 의용소방대원의 <u>장애등급</u>이 확정된 날</p>	<p>제18조(재해보상) ① -----<u>법시행규칙</u>----- ----- ----- -----.</p> <p>1. ----- -----</p> <p>2. -----<u>장애의 정도</u>가-----</p>

현행	개정안
<p>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p> <p>② ~ ③ (생략)</p>	<p>3. -----</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u>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u></p> <p>2. 지급인원: 자녀 1명</p> <p><u>3. 지급금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u></p> <p>② (생략)</p>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 -----</p> <p>-----</p> <p>-----</p> <p>-----</p> <p>-----</p> <p>-----</p> <p>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p> <p>2. (현행과 같음)</p> <p>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